



#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·육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7. 6. 20.] [전라남도조례 제4240호, 2017. 6. 20., 일부개정]

전라남도

전라남도 (식량원예과) 061-286-6471

## □ 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자생하는 토종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7. 6. 20.)

## □ 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토종작물"이란 「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에서 별도로 전라남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. (개정 2017. 6. 20.)
2. "농업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 (개정 2017. 6. 20.)
3. "농업인 등"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. (개정 2017. 6. 20.)

## □ 제3조(책임과 의무)

- ① 도지사는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·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 6. 20.)
- ② 도지사는 농업인 등이 토종작물을 보호·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□ 제4조(보존·육성계획 수립)

- ① 도지사는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  1. 토종작물의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·육성에 관한 사항
  2. 토종작물 생산물의 판매·소비촉진에 관한 사항
  3. 그 밖에 토종작물의 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
- ②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 등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·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 6. 20.)

□ **제5조(사업지원)**

도지사는 토종작물의 보존·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□ **제6조(재배계획서 제출)**

농업인 등이 지역 토종작물을 보존·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재배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·군수에게 매년 2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**제7조(생산비 보전지원 신청 및 지원)** (조명개정 2017. 6. 20.)

- ① 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토종작물을 재배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조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때에는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생산비 보전지원금(이하 “지원금”이라 한다)을 신청할 수 있다. (개정 2017. 6. 20.)
- ② 제1항에 따른 토종작물별 수익성 기준, 지원금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.
- ③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지원금 지원을 위한 토종작물별 수익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**제8조(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)**

- 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 대상자 결정은 시·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·군수가 결정한다. (개정 2017. 6. 20.)
- ② 도지사는 매년 토종작물의 보존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,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(개정 2017. 6. 20.)
- ③ 토종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.

□ **제9조(시행규칙)**

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17. 6.2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